



## Employment

### New Approaches to Pay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점점 더 융통성 있게 일하기를 원하며, 특히 직업에 생활을 맞추기보다는 생활에 걸맞는 직장을 찾고자 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면 급여를 주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법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급여 지불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Section 1 Statement

첫째로, 직원과 협의한 임금 체계는 1996년 근로자 권리법의 section 1을 따라 이름 붙인 section 1 statement에 서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1 statement는 한 달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근무를 시작한지 2달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1 statement는 계약서와는 다르지만 근로 계약서에 들어갈 대부분의 중요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급여 등급 또는 급여 계산 방법이 Section 1 Statement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얼마나 자주 급여를 지불하는지 (매주 내지는 매달)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이 보너스나 커미션을 받는다면 이 점도 section 1 statement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National Minimum Wage

1998년 국가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최저 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5세 이상은 현재 시간당 £7.50이며 2018년 4월 1일부터는 £7.83으로 인상됩니다.

#### Equal Pay

2010년 평등법 66조항은 모든 계약서에 묵시적 성평등 조항을 부여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임금 체계를 계획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됩니다.

#### Part-time work

파트타임 근로자 규정(The Part-time Workers (Prevention of Less Favourable Treatment) Regulations 2000)에 따르면 파트타임 근로자는 풀타임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직원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표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하고자 할 때 공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풀타임 급여에 비례한 급여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 Discrimination

차별 금지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새로운 임금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근 수당 인상과 같은 특정한 임금 체계가 어떤 사람 들에게 불리하다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차를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기업활동에 다른 임금 적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Alternatives to standard pay structures

앞서 언급한 간단한 규칙들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고용주는 직원과 협의하여 비즈니스에 걸맞는 어떤 임금 체계든지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근무 시간의 표준 임금을 정해 놓고 추가 근무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불한다던가, 기본 임금을 정해 놓고 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이 특정 시간에 몰린다면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차별화된 임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discussing any new ideas about how to pay your employees,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for advice.

David Rushmere  
Solicitor Advocate  
E: david.rushmere@3hrscs.com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3HR Benefits Consultancy Limited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rm Reference Number: 556015

The registered office of both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and 3HR Benefits Consultancy Ltd is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Mainline Tel: 0207 194 8140 Web: www.3hrscs.com